

2005년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수련회

- 일시 : 2005년 11월 4일(금) - 5일(토)
- 장소 : 남양주 초록향기 농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자료집 순서

자료집 순서	2쪽
수련회 순서	3쪽
상임대표 인사말	4쪽
제 1강연 : 6자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5쪽
<강사 : 김형기(전 통일부 차관, 민족공동체 포럼 회장)>	
제 2강연 : 6.15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6쪽
<강사 : 안재구(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고문)>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상반기 평가	9쪽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이후 사업계획	11쪽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조직체계	12쪽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활동일지	13쪽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운영규약	17쪽
별첨1 -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선언문	21쪽
별첨2. -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결성 선언문	23쪽
별첨3. - 6.15공동위원회 결성 선언문	25쪽
별첨4. - 민족통일선언문	27쪽
별첨5. - 북측의 강령, 규약 초안	28쪽
별첨6. -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운영위에서의 북측준비위의 강령, 운영	
세칙 제정에 대한 의견	31쪽

수련회 순서

11월 4일

- 오후 3시 집결 및 영화상영
- 오후 4시 30분 상임대표 인사말
- 오후 4시 40분 제1강연
 - 6자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 강사 :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 오후 6시 저녁식사
- 저녁 7시 제2강연
 - 6.15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강사 : 안재구 (통일원로)
- 저녁 8시 휴식
- 저녁 8시 15분 발제
 - 6.15경기본부의 상반기 평가, 이후 사업계획
- 저녁 9시 15분 휴식
- 저녁 9시 30분 뒷풀이

11월 5일

- 오전 8시 기상 및 아침식사
- 오전 9시 등산
- 오전 10시 해산

상임대표 인사말

우리나라만의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세계 도처에서 민족적, 종교적, 사상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진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제는 누가 뭐라 해도 통일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혜와 용기를 모아 남북이 공조하여 이 잘못된 세계질서 속에서 올바른 노선을 지향하고 바른 길로 통일의 터를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모이는 수련회에서 우리 민족의 한을 쏟아내고 끈끈한 정으로 한데 어울려서 조국 통일과 민족의 앞날을 서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한 명 수

제 1강연

6자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강사 : 김형기(전 통일부 차관, 민족공동체 포럼 회장)>

제 2강연

6.15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사 : 안재구(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고문)>

0. 들어가는 말

8.15해방 이후 자주독립을 해야 할 우리 조국이 미·소 냉전에 의해 북위 38도선에 의해 분단되어 남은 미 점령군에 의한 군정으로 일제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주구들이 친미 이승만과 결합하여 정권을 창출했다.

이로써 60년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6.25전쟁으로 분단은 영구화되고 분단을 반대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냉전에서 소멸할 대상인 공산주의자로 몰려 처단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압의 수단으로 되어 인권의 말살과 독재의 정당성의 수단으로까지 되었다.

1. 7.4남북공동선언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1) 자주적으로, 2) 평화적으로, 3) 민족대단결로

자주적평화통일 3대원칙

2. 민족대단결운동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모든 민족이 대단결운동을 전개하여

___ 범민족대회의 조직 ___ **조국통일범민족연합**

3. 6.15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회동, 남북공동선언

- 내용: 1.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2.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3.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해결
 4.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로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5. 당국 간의 대화 개최. 상호 정상 방문

이에 대한 민간교류를 위하여 8.15기념, 6.15기념행사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공동행사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류를 시작하고 확대

4. 6.15공동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상설 기구로서
2004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을 합의

2005년 1월은 남과 북 해외의 3자가 모두 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결성, 심양에서 회동하여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

이 조직으로써 2005년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8.15기념 6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민족대단결을 해외에 과시했다.

이로써 6.15공동위원회는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하는 사회운동기구로까지 실질적으로 격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6.15공동위원회가 조직적 체모를 갖추기 위하여 강령과 운영세칙을 정하고 사회의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한 통일운동으로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3자의 연대기구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있다. 후자의 위상과 역할을 우선 드러내기 위하여 범민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써 6.15공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명백해질 것이다.

	위 상	역 할
범민련	민족대단결운동	연합·연방국가 건설을 위한 전선의 모체
6.15공동위	통일을 위한 사회운동	모든 민간통일운동단체를 결합한 사회세력

이를 명백히 확정해서 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북측 준비위원회는 명칭도 개정하고 강령과 시행세칙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10월 21일과 11월 1일 2차에 걸쳐 이를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

참고로 편지내용을 공개한다.

**** 북측준비위원회 10월 21일 서신 ****

“6.15공동위원회 제2차회의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남,해위는 뜻깊은 올해에 6.15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큰 규모의 통일행사들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 온 겨레의 강한 통일외지와 열망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습니다.
올해초에 어렵지만 시작을 잘 떤 6.15공동위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것은 6.15공동위원회에 망라된 북과 남, 해위의 모든 관계자들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니고 있는 중대한 사명이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놓고 볼때 결성만 해놓은데 불과한 6.15공동위원회가 똑똑한 조직적체모도 갖추지 못한채 해를 넘긴다면 우리 모두의 실책으로 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해내외 온겨레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세계가 전민족이 하나로 결합된 6.15공동위원회의 향후 발전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때 특별한 리유없이 아무런 조직적대책도 없이 허를 넘기면 겨레에게는 실망을 주고 해내외반통일 분렬주의세력들에게는 언질을 주게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15공동위원회 제2차회의가 어떤일이 있어도 올해중에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며 만일 귀측의 내부시정으로 우리가 제기한 11월 25일경 개최가 어렵다면 늦어도 12월 초순경에는 성사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귀측의 긍정적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11월 1일, 북측준비위원회 서한 ****

“6.15공동위원회 2차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귀측이 10월말까지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한 귀측의 공식립장이 오지 않아 올해말의 공동사업을 예견하는데 큰 지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2차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북과 해외측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남측의 적지 않은 단체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중대사를 협의하게 되는 회의가 북, 남, 해외 3지중 어느 이방에 속한 몇몇 개별적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차회의개최와 관련한 귀측의 공식립장을 긴급 정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차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답을 바랍니다.”

2005년 11월 4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상반기 평가

1) 성과

- ① 6.15 공동위원회가 건설된 후 경기지역에서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 간 자발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4월29일 경기본부를 출범하였다. 40여개 단체로 출발한 경기본부는 이후 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하남, 오산, 화성, 부천, 용인 등 시, 군조직이 건설되는 성과를 낳았다.
- ②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6.15 5돌 기념행사를 경기본부 이름으로 개최하여 시·군별 지역조직 건설을 추동하였고 300여명의 회원들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하여 통일의 열기를 고조시킴으로써 경기지역 통일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③ 광복 60주년 민족대축전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경기지역 곳곳에서 통일노래자랑, 통일영화제, 통일한마당 다양한 통일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경기도민들과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공유하고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모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 ④ 8.15민족대축전 개막식에는 2000여명 가량의 경기도민이 참여하였다. 경기본부는 부족한 집행 여건에서도 지역과 부문과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원만히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⑤ 역사와 성격이 다른 40여개의 단체가 짧은 시간 내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사업을 협력적으로 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집행위원회가 받침 함으로써 가능한 결과였다. 이를 통해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의 폭넓은 '통일운동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기본부는 경기지역 통일운동의 일상적인 조직 거점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문제점

- ① 31개 시군과 1천만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지역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조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소한 측면이 있다.
- ②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전면화 되는 시기에 '민-관'의 긴밀한 결합은 통일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③ 출범식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행사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본부에 대한 참여를 보류하여 초반 조직 사업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초래 하였다. 이는 집행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사전 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었다.

- ④ 6.15 5돌 경기본부 기념식과 민족통일대행진단 환영식 등 주요 행사시에 집행책임과 역할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함으로써 행사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7인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역할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공백이 생김으로서 파생된 결과였다.

- ⑤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사무처 상근 인원을 확충하지 못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이후 사업계획

1) 사업 방향

- 시군조직 및 참가단체 확대
- 민-관 협력체계 구축

2) 조직사업

① 조직 확대 소위 구성

- 운영위원/집행위원장/사무처 등으로 구성(4인-5인 정도로 구성)
- 운영위원장에는 배월수 운영위원을 추천
- 위상은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서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3) 6.15 공동위 홍보자료 발간

- 리플렛

4) 을사늑약 100년 '민족자주선언 사업'(가칭)

- 친일잔재 청산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 민족문제연구소등과 협력
- 11월17일 을사늑약100년에 맞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음모 규탄과 동북아 평화 평화선언' 운동 전개

5) 이북 영화 상영

- <어떤 나라> 혹은 <천리마 축구단> 상영
- 경기본부가 주최하고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 가능한 지역과 단체에서 적극 추진한다.

6)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와 민-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 취지: 토론회를 통해 기간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 일시; 11월
- 방식; 경기본부 주최 //민주평통 후원
- 초청; 경기도/도의회/각 정당/언론사 등

7) 사무실 마련

- 12월까지 사무실 마련.
- 적절한 재정사업 또는 후원사업 전개

8)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개발

- 통일부 신설//조례 제정
- 2006년 지방선거 관련 정책 개발 등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조직체계

■ 고 문 (현재 24인)

김경희 (수원여성연화이사)	김추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김진춘목사 (매원교회)	민경학 (전 전농도연맹의장)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석달윤 (통일운동가)	안재구 (범민련경기인천연합고문)
윤기석목사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장)	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이기형 (시인)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지원스님 (보련사)	정춘자 (경기여성연대고문)
표문태 (민족문학가)	최순영 (경기여성연대고문, 국회의원)
효림스님 (보광사주지스님)	한성건 (경기도 IT협의회 의장)
문학진 (국회의원)	이기우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원영 (국회의원)
최성 (국회의원)	강성종 (국회의원)

■ 지도위원(현재 10인)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대표)	김경수 (선문대학교양학과교수)
김동균 (변호사)	박공우 (변호사)
수산스님 (대승원)	송재룡 (경희대사회학과교수)
이선이 (아주대사회학부교수)	유은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임영인신부 (나눔의 집)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 의원단(현재 7인)

김현욱 (경기도 의원)	장경순 (경기도 의원)
신종철 (경기도 의원)	김부광 (경기도 의원)
박미진 (경기도 의원)	하수진 (경기도 의원)
임봉규 (경기도 의원)	

■ 참가 단체(현재 51개)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6.15공동위원회 남양주본부	27	공무원노조경기본부
2	6.15공동위원회 부천본부(준)	28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3	6.15공동위원회 성남본부	29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4	6.15공동위원회 수원본부	30	녹색자치경기연대
5	6.15공동위원회 안산본부	31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6	6.15공동위원회 오산본부	32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7	6.15공동위원회 용인본부(준)	33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8	6.15공동위원회 하남본부	34	민주노동당경기도당
9	6.15공동위원회 화성본부(추)	35	민주노총경기도본부
10	(사)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36	범민련경기인연합
11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37	세계평화여성연합경기남부지부
12	경기경실련	38	세계평화청년연합 경기남부지부
13	경기남부총련	39	안양군포의왕통일연대
14	경기도교회협의회	40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1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41	원불교경기인천교구
16	경기동부총련	42	인천경기기자협회
17	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	4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18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4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기연합
19	경기민중연대	45	전농경기도연맹
20	경기복지시민연대	4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21	경기불교연합회(준)	47	천도교수원교구
22	경기여성단체연합	48	천주교수원교구가톨릭농민회
23	경기여성연대	49	천주교수원교구민족화해위원회
24	경기KYC	50	한국노총경기본부
25	경기지역공부방연합회	51	흥사단경기도협의회
26	경기환경운동연합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활동일지

■ 4 월

- 4월 20일 대표자회의
- 4월 25일 1차 운영위원 회의
- 4월 29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발족

■ 5 월

- 5월 13일 6.15공동위원회 안산본부 발족
- 5월 16일 2차 운영위원 회의
- 5월 25일 1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5월 26일 3차 운영위원 회의
- 5월 31일 1차 공동대표자 회의
- 5월 31일 615남측준비위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간담회

■ 6 월

- 6월 2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과의 간담회
- 6월 8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비상 공동대표자 회의
- 6월 10일 4차 운영위원 회의
- 6월 14일 6.15 5돌 기념식 진행
- 6월 14-17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표단 2명 파견
- 6월 19일 6.15공동위원회 수원본부 발족
- 6월 25일 6.15공동위원회 하남본부 발족
- 6월 28일 6.15공동위원회 성남본부 발족

■ 7 월

- 7월 1일 6.15 5돌 기념식 참가 단체에 감사편지 발송
- 7월 1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4일 5차 운영위원 회의
- 7월 12-13 8.15민족대축전관련 남북개성 실무회담
- 7월 15일 6.15공동위원회 오산본부 발족
- 7월 19일 12시 지역본부집행위원 연석회의
- 7월 19일 2시 지역본부집행위원과 남측준비위 집행위원과의 회의
- 7월 19일 4시 남측준비위 2차 집행위원회의
- 7월 20일 공동집행위원장단 수련회
- 7월 26일 2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7월 29-30 8.15민족대축전 관련 남북 개성 실무회담

■ 8 월

- 8월 1일 남측준비위 7인소위와 지역본부 대표자간 간담회
- 8월 3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3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2차 공동대표자 회의
- 8월 5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8월 8일 6차 운영위원 회의
- 8월 8일 백두한라민족통일대행진 평택 입성 환영식
- 8월 10일 3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8월 11일 수원방송 경기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8월 12일 광복 60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
- 8월 13일 6.15공동위원회 남양주본부 발족
- 8월 13일 6.15안산본부 8.15 안산통일한마당 진행
- 8월 13일 6.15수원본부 8.15 수원통일한마당 진행
- 8월 13일 6.15오산본부 제1회 오산시통일노래 한마당 진행
- 8월 13일 6.15부천본부(준) 8.15부천통일한마당 진행
- 8월 14-17 815민족대축전 참가
- 8월 29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 월

- 9월 5일 7차 운영위원 회의
- 9월 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10-14 평양에서 남북여성상봉 모임에 배월수(6.15경기본부 운영위원) 참석
- 9월 21일 6.15남측준비위 지역집행책임자연석회의
- 9월 21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고문이신 김병권선생 타계
- 9월 26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29일 YMCA경기도협의회 탈퇴
- 9월 30일 - 10월 1일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집행간부 워크샵

■ 10 월

- 10월 4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5일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건설을 위한 1차 모임
- 10월 10일 8차 운영위원 회의
- 10월 17일 조직확대소위 1차 회의
- 10월 18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19일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건설을 위한 2차 모임
- 10월 21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워크샵 참석
- 10월 25일 대한성공회 이천성당의 <자유오케스트라>창단식 참석
- 10월 26-30 통일원로 평양방북에 상임대표 방북
- 10월 28일 6.15오산본부 후원 일일주점 참석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운영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④ 경기본부는 남측준비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7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 2회로 한다.
- ② 필요시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9조(기능)

-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0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 ②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 발의와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제12조(기능)

- ① 대표자 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공동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4조(구성과 소집)

- ① 운영위에서 추천된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로 한다.
- ② 조직, 정책, 홍보 등 필요한 부서는 운영위 의결을 거쳐 둘수 있다.
- ③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 ①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②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자문기구

제16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 ③ 의원단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18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 대표자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1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0조 (사무처)

- ①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장은 공동 집행위원장단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사무처에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수입 및 지출) 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총당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첨 1.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발족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 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저·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 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

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서서 나가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별첨 2.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결성 선언문

오늘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절실한 염원을 담아 7천만 겨레 앞에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남측준비위원회'결성을 선언한다.

올해는 광복 60년이자, 또한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분단 60년은 남과 북, 해외 어디라 할 것 없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는 이 비극을 딛고 기필코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낼 굳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서있다.

우리에게는 5천년 민족사를 면면히 이어 온 자주정신과 민주주의를 개척해 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빈곤의 세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온 자부심이 있으며, 또한 가슴 아픈 민족 분단 60년을 끝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약속한 자주와 통일, 평화의 장전이다.

6.15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은 통일역사의 계승이자 실천선언이다.

6.15공동선언 발표가 있고서야 이산의 아픔이 삭여졌고, 남과 북으로 오가는 길이 열렸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통일도 이제는 소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광복 60돌,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올해에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위험을 걷어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막혀있는 남북 관계가 재개되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전 부문에서 남북협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6.15시대에 역행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류 공통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각계각층 모든 이가 참여하는 범국민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족적이고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을 그릇도 필요하다.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민족의 단합과 평화통

일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 아래 '역사에 길이 남을'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다.

2005년 1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별첨 3.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의지를 모아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

민족수난의 40년과 이어진 60년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남과북(북과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반만년의 민족사를 개척해 온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내외에 조성된 온갖 난관과 위협도 박차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역사를 전진시켜 왔다.

그 어떤 장벽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사상과 제도, 정파와 종교, 지역의 차이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결코 갈라 놓을 수 없었다.
현 시대는 6.15 통일시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열이후 처음으로 남과북(북과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된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이다.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결성은 민족수난과 분열의 100년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전 민족적인 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발표 이후 지난 5년간 통일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계승하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민족 대단결의 모체,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북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이끄는 정신은 6.15 공동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자주선언, 평화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민족의 자주역량으로 평화로 통일로 가는 활로를 밝힌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 주

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그 실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과 북(북과 남),해외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자주적 연대와 협력이 풍성하게 꽃피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평화수호는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고 이 땅에서 전쟁위협과 군사 적대결과 긴장을 걷어내며 항구적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온 민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자.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고 단합과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 세계 앞에 우리 민족의 지혜와 슬기, 단결을 보여주자.

2005년 3월 4일

금 강 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별첨 4.

민족통일선언문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앞에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놓은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였다. 민족내부에서 반목과 대결의 과거를 밀어내고 화해와 단합의 오늘을 마련하였다. 끊어진 혈맥은 하나로 이어지고 장벽은 허울로만 남아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되고 6.15 공동선언의 이념은 온 겨레가 지지하는 공동의 애국이념으로 되었다. 우리는 바야흐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6.15 공동선언이 열어 준 길을 따라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나가려는 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다.

둘째, 2000년 6월 15일은 남과 북이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정하고 민족공동으로 기념할 것이다.

셋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기본방도는 동족사이에 공조를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당국사이, 민간사이의 공동보조를 도모하고 연대를 강화하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평화 없이는 평화통일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6.15 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남, 북, 해외의 민족통일운동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를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온 겨레를 하나로 단합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가장 폭넓고 위력한 통일애국운동기구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조국통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올해에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대행진을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칠 것이다.

6.15 공동선언발표 5돌을 기념하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별첨 5.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강령 (초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다.

6.15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민족사의 흐름이다.

6.15 공동선언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약칭: 6.15공동위원회)는 겨레의 한결같은 조국통일념원을 담아 자기의 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삼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간다.

2.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공동의 기초로 삼는다.

3.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킨다.

4.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5.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온 겨레의 애국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족적 화합과 통일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한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초안)

1조: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성격과 목적

1)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북,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행사들과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 나간다.

2조: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조직 원칙과 구조

1)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강령을 승인하는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 3자의 합의 밑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3)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북과 남, 해외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며 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간다.

4)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 아래에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실정에 맞게 둔다.

3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운영

1)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는 북측, 남측, 해외측 준비위원회의 3자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

(1)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는 년 1~2차 정도 개최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대표들은 북측, 남측, 해외측 준비위원회들에서 선출하여 파견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북측, 남측, 해외측 준비위원회 실무자회의를 운영한다.

3)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는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며 다른 준비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4)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와 그 아래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 개별적인사들은 6.15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한다.

5)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 북측, 남측, 해외측 준비위원회는 각기 자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세칙을 만들 수 있다.

4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

1)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공동사무국을 둔다.

2)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은 북측, 남측, 해외측 준비위원회의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5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강령과 운영세칙 발효 및 수정보충

1)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강령과 운영세칙은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날부터 발효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강령과 운영세칙은 필요에 따라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재정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일체 비용은 북, 남, 해외 준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별첨 6.

6.15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 11차 운영위에서의 북준비위의 강령, 운영세칙 제정에 대한 의견

□ 강령 및 운영세칙 제정 관련 검토 의견

(*실무소위에서 각각의 의견이 상이함으로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음.)

- ① 강령은 시급하지 않고 이미 채택된 공동 문건 등을 통해 실천적 통합이 가능하며, 운영세칙 역시 조직의 수준에 맞게 북측의 제안을 간소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대체로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강령과 운영세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전민족적 통일운동연대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② 이에 각각의 입장과 그 근거를 구체화한 의견서를 작성 별첨하는 방식으로 회의결과를 정리하기로 함.(별첨하는 의견서는 편의상 의견 1/ 의견 2 등으로 구분하고자 함.)

결정사항

- 1 가능한 조속한 내부협의를 필요하며,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폭넓은 협의와 상호 이해를 위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공동위원장단회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의견 1.

강령과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실무소위 검토의견 1.

2005. 10. 22

작성자 : 이태호 협동처장

1. 의견요지

- 성문화된 강령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며, 그 동안 합의되어온 공동문서 또는 향후 합의될 공동문서 등으로 '불문화不文化'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세칙은 필요하나 3자 관계의 현 단계에 걸맞은 최소한의 합리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운영세칙 등이 표현하는 바 3자 관계의 현 수준과 남북해외공동위원회의 위상과 발전경로에 대해서 남북해외의 협의에 앞서 남측 내부의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세부의견

<강령 관련>

-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합의하는 남북 해외의 민간통일운동 단체와 인사가 함께 하는 상설적 통일운동연대기구로서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임
- 이 때, 연대기구가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라 함은 이 기구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의 실천방향과 관련된 공동문서와 결의 등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생산 결의하며, 이를 남북해외 대중에게 알리고 고취하기 위한 대중적 행사 등을 주관한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연대기구는 소속단체에 지도적 위치를 갖는 상위조직이나, 의사결정에서 있어서 민주적 집중을 지향하는 연합(연맹)적 결사체는 아니며, 남북해외가 각자의 다른 처지와 입장을 전제하고 최소한의 합의된 실천방안을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는 협의체적 결사라 할 것임.
- 상설기구 또는 전민족적 연대기구라는 표현으로 인해 이러한 근원적 전제가 바뀌는 것은 아님.
- 이러한 협의적 조직관계에서는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두고 협의과정의 성실성과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각 단위의 공동지향과 결합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성문화된 강령을 가지는 것에 비해 매 시기 합의되는 문서 등을 바탕으로 '불문화'된 공통적 지향의 체계를 발전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운영 세칙 관련>

o 기본방향

- 운영세칙은 선언이나 결의, 지향의 표출과는 구분되는 실무적인 문서로서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미래의 발전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하고 실용적인 활동원칙과 규칙을 도출, 그 최소한을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세칙은 남북해외 3자 관계가 중앙집권적 관계나 다수가 소수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충실한 협의와 성실한 합의이행에 의존하는 관계임을 정확히 표현하고, 남북해외 각 위원회와 그 소속 단체와 인사들의 권리 의무를 적시하여야 할 것임
- 현 단계에서는 공동사무국 설치보다 공동위원장 회의의 역할을 높여 실무자 회의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연대기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운영세칙은 이를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 공동위원장회의 역할강화의 필요성

- 주지하듯이 지난 2005년 3월 출범식 준비 과정에서 해외 측 구성의 한계 등을 이유로 3자 협의기구의 출범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남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남, 북, 해외가 극적으로 합의해냈던 해외 측 공동 의장 제도의 실천적 의미를 살리고 남과 북, 해외 위원장간 조정조율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장회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남, 북, 해외 각 준비위원회의 당면한 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함과 아울러, 6.15공동위원회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민족대단결의 내용과 폭을 진전시키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o 성격과 목적

- 북측 운영세칙안 1조 1)항 중 ‘폭넓게 망라하는’ ‘전민족적’ 등의 표현은 자의적 표현임. 또한 ‘통일운동연대조직’보다는 결성선언문에 표현된 ‘...연대기구’라는 표현이 적절함
 - ☞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남북해외의 민간 통일운동연대기구이다.” 로 수정

o 원칙과 구조

- 북측 운영세칙안 2조 1)항 중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강령을 승인하는”은 당초 이 기구 발족 당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적시한 점, 강령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
 - ☞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남과 북 해외의...” 로 수정
- 북측 운영세칙안 2조 2)항 중 “북, 남, 해외 3자의 합의 밑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부분은 성격을 보다 명확하고 간소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 ☞ “남, 북, 해외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로 수정
- 북측 운영세칙안 2조 3)항은 동조 2)항과 중복되므로 생략
 - ☞ 동조 3)항 삭제
- 북측 운영세칙안 2조 4)항외 각 단체와 개인의 참여권리 조항 신설 필요.
 - ☞ 5)항 신설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남, 북, 해외의 단체와 개인은 누구든지 남측 준비위원회, 북측준비위원회, 해외측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o 기구 운영

- 북측 운영세칙안 3조 1)항 "... 회의는 남, 북, 해외 측 준비위원회의 3자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 동조 1)항 (1)호 "...회의는 년 1-2차 정도 개최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 ☞ 3조 1)항 "...회의는 남, 북, 해외 측 준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로 수정
 - ☞ 3조 1)항 (1)호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며, 남, 북, 해외 위원장의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
- 북측 운영세칙안 3조 1)항 뒤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관련 조항 필요
 - ☞ 3조 2)항 신설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사업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의 조정과 합의를 위해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둔다." (신설)
 - ☞ 3조 2)항 (1)호 신설
"...위원장회의는 남, 북, 해외 준비위원회 각 (공동)의장 중 1인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신설)
- 북측 운영세칙안 3조 3)항 중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며, 다른 준비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수정 필요
 - ☞ 3)항 -> 4)항
"... 발족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공동의 합의결과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업과 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로 수정
- 북측 운영세칙안 3조 4)항 중 "6.15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한다"를 다음과 같이 보완 필요
 - ☞ 4)항 -> 5)항
"... 6.15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지며,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할 의무를 지닌다."

o 공동사무국

- 북측 운영세칙안 4조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삭제
 - ☞ 4조 공동사무국 관련 각항 삭제
- ※ 다만 '남북해외 별 연락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의 검토 필요

o 발효 및 수정 보충

- 북측 운영세칙안 5조 제목 및 1)항 '강령'부분 불필요
 - ☞ 5조 중 '강령' 부분 삭제

의견 2.

강령과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실무소위 검토의견 2.

2005. 10. 23

작성자 : 한현수 정책위원

1. 요지

-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4년간 남북해외가 함께 추진해온 민간통일운동의 성과를 반영하여 결성된 '상설적 통일운동기구'임.
- 상설적 통일운동기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운영과 실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식화는 것은 필수적임
cf. 남측에서도 지난 9월 30일 남측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남측내 운영세칙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음.
- 남, 북, 해외 현황과 조건이 모두 각이한 조건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은 상설기구로서의 성격, 3자연대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함.

2. 의견

<강령>

- 6.15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실천에 합의하는 남북해외 정당, 사회단체, 개인들이 망라된 상설적 통일운동기구임.
- 6.15공동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결성한 것은 사안별 공동대응이나 행사준비의 차원을 뛰어 넘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해외 각계 통일운동단체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음.
- 이는 남, 북, 해외 각계의 통일운동이 각자의 입장아래 진행되면서도, 이를 최소한의 공통분모, 지향아래 한 데 모아, 보다 규모있고 집중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이자,
- 정치적 지향이 각이한 세력들이 통일에 대한 실천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족구성원간 이해와 신뢰, 단합을 도모하는 과정이기도 함.
- 상설적 통일운동기구로서 6.15공동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지속적인 공동사업과 실천을 도모하여 단합을 강화하는 것은 현 단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지향을 세우고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각계의 다양성을 감안하면서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견지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6.15공동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내용을 들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북측에서 제안한 원안은 수용 가능한 내용이며, 남측의 정서와 표현을 반영, 다소 수정 보완하면 될 것.

<운영세칙>

- 운영세칙은 현 단계 공동위원회의 조직수준을 반영하면서도 남, 북, 해외 3자가 구성된 상설기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운영구조, 결합수준 등을 명시해야 함.
- 남, 북, 해외 준비위에 대단히 다양한 단체들이 망라된 것을 고려할 때, 각계가 충분히 참가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전체회의> 같은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사전 협의, 조정 단위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단회의 등을 둘 수 있음.
- 상설적 협의와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로 공동사무국을 두는 규정은 살리되, 실질 운영 시기는 준비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
- 북측에서 제안한 원안 중 <3자 동의로 개최하는 공동위원장단회의> 규정을 신설하고, 표현을 다소 수정하면 될 것.